#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

신청인(채무자) ㅇㅇ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(채권자)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신 청 취 지

- 1.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카단○○○호 유체동산가압류신 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○○. ○. ○.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.
- 2.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.
- 3.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신 청 원 인

- 1. 피신청인(채권자)은 20○○. ○. ○. 신청인(채무자)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도 변제기일이 지난 뒤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인(채무자) 소유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카단○○○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신청인(채무자)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그러나 신청인(채무자)은 20〇〇. 〇. 〇. 피신청인(채권자)으로부터 금 〇〇〇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. 왜냐하면, 피신청인(채권자)이 위 채권을 20〇〇.

- ○. ○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에 주소를 둔 신청외 ■■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짜로 채권양도통지와 함께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양수인인 신청외 ■■ ■에게 지급하라는 당부까지 있어서 신청인(채무자)은 변제기일인 20○○. ○. ○. 신청외 ■■■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입니다.
- 3. 그러므로 신청인(채무자)의 피신청인(채권자)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소 명 방 법

1. 소을 제1호증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

1. 소을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

1. 소을 제3호증 영수증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신청인(채무자)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### ㅇㅇ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집 행 법 원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83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첨부		
불복절차	·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)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